

- 29, 29-1, 5), (2))
- (1)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높은 코코아  
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, 땅콩 또는  
견과류가공품 중 살모넬라 기준 신설  
하는 세척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 
(2) 야채 또는 과실이외의 식품에는 세척제  
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
- 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 
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  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  
리 및 관리기준 개정(안 제8, 3, (6))
- (1) 식품접객업소에서 원료의 세척에 사용

## [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]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56호, 2009. 9. 25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일부를 삭제, 통합·변경 및 신설하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, 국민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공하고자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- 가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 종 삭제(Ⅲ. 제 1.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6, 13, 18, 19, 25, 39, 40, 41, 42, 49, 96)
- (1) 제외국에서 이미 사용 중이던 살균소독제 중 삭제 성분 반영

- 나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성분명 변경(Ⅲ. 제 1.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43, 75)

(1) “ $\alpha$ -알킬( $C_{11}$ – $C_{15}$ )- $\omega$ 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(에틸렌옥시드9~13 몰)”을 “ $\alpha$ -알킬( $C_6$  이상)- $\omega$ 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( $\alpha$ -alkyl- $\omega$ -hydroxypoly(oxyethylene) where the alkyl chain contains a minimum of six carbon)”으로, “은”을 “전해반응에 의해 생성된 은이온[구연산으로 안정화시킨 구연산이수소온의 형태, 단 금속성 은(metallic silver)은 제외] (Silver ions resulting from the use of electrolytically-generated silver ions stabilized in citric acid as silver

dihydrogen citrate(does not include metallic silver))”로 변경

다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 중 유사성분 통합(III. 제 1. 제조 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44, 45, 46)

(1) α-알킬(C<sub>10</sub>-C<sub>14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, α-알킬(C<sub>12</sub>-C<sub>15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(평균분자량 965), α-알킬(C<sub>12</sub>-C<sub>18</sub>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에틸렌)폴리(옥시프로필렌) 3개의 유사 성분을 하나로 통합

라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α-알킬(C<sub>6</sub> 이상)-ω-하이드록시폴리(옥시프로필렌) 신설(III. 제 1. 제조기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반 1. 중 36)

마.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일반사용기준 개정(III. 제 2. 일반사용기준)

(1) 기구등에 남아있는 살균소독제 용액은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자연건조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도록 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[www.kfda.go.kr](http://www.kfda.go.kr)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「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 268호, 2009. 10. 1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「식품위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하고자 「위해평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개정에 따른 관련

규정 정비(안 제4조, 제5조, 제6조)

(1)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수행하여야 할 위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함.